

제32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 회 기 : 2024. 1. 25.(목)~1. 29.(월)(5일간)

2. 의사일정

일 시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1. 25.(목) 10:00	본회의 (1차)	개 회 식	본회의장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1. 제32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시정에 관한 연설 4. 동두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동두천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11. 동두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 26.(금) 10:00	본회의 (2차)	1. 조례안 등 심의	의원 회의실
1. 27.(토) ~ 1. 28.(일)		휴 회(공휴일)	
1. 29.(월) 10:00	본회의 (3차)	1. 조례안 등 최종 의결	본회의장 (토론 및 의결)

동두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4. 1.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제안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심의의 전문성을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 정비(안 제2조 제1호)
 - “정보”용어의 정의 정비
- 나.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 제목 정비(안 제5조)
 - 정보의 공표 등 →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 다. 다중부서 지정 방법 신설(안 제10조 제3항)
 - 주관부서 및 지원부서 지정방법 신설
- 라.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비율 조정(안 제12조)
 - 외부 전문가 위원 비율 확대(3인→ 위원수의 3분의 2)

동두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정보의 공포 등)”을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청구된 내용이 여러 부서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 개의 주관부서와 한 개 이상의 지원부서로 나뉘어 처리한다. 주관부서는 소관 청구 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에서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구정보의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첫 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부서가 주관부서가 된다.

제12조제3항 중 “외부 전문가 3인을”를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되, 어느 한 성별이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로 하고, “정보공개업무 및 민원업무 담당과장은”을 “자치행정과장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정보”란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1. ----- -----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정보의 공표 등) (생략)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현행과 같음)
제10조(부서간의 협조)	제10조(부서간의 협조)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청구된 내용이 여러 부서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 개의 주관부서와 한 개 이상의 지원부서로 나눠서 처리한다. 주관부서는 소관 청구 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에서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구정보의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첫 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부서가 주관부서가 된다.

현행	개정안
제12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② (생략) ③ 위촉위원은 집행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u>외부 전문가 3인</u>을 시장이 위촉하며 <u>정보공개업무 및 민원업무 담당과장</u>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⑤ (생략)	제12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외부 전문가</u> 중에서 위원회의 3분의2 이상으로 하되, 어느 한 성별이 위원의 <u>10분의 6</u>을 넘지 않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u>자치행정과장</u>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⑤ (현행과 같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23.] [법률 제17690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12. 22.>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12. 22.>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 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2.>

붙임 2**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동두천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I.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II. 미첨부 근거 규정

-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III.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시행 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IV.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붙임 3

현행조례

동두천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 2020.06.01]

(일부개정) 2020.06.01 조례 제2135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자치행정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60-2117

제1조(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1.31.>

1. “정보”란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집행기관”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3. “정보공개”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4. “청구인”이란 제4조에 따른 사람으로 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7. 1.31.>

제3조(집행기관의 의무)① 집행기관은 청구인으로부터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대다수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청구인)① 모든 국민은 집행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7. 1.31.>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5조(정보의 공표 등) 집행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공개의 청구방법) ① 청구인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공개청구서를 집행기관에 직접 출석,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2.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의 앞에서 진술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제공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요청으로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정보가 원본의 훼손, 오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본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집행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집행기관이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 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 1.31.>

제8조(비용의 부담) ① 정보공개 수수료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비용의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다.

③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의 부담을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개정 2017. 1.31.>

제9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① 집행기관이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 정보공개의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공개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부서간의 협조)① 정보공개사항을 처리하는 부서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개정 2017. 1.31.>

제11조(정보공개 심의회)정보공개와 관련한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이의신청의 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정보공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심의회의 구성 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에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소속 직원중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7. 1.31.>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6. 1.>

③ 위촉위원은 집행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인을 시장이 위촉하며 정보공개업무 및 민원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제13조(심의회의 기능)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의 여부결정
2. 집행기관의 장이 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요청 한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7. 1.31.>

제14조(심의회의 회의)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1.31.>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품의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누설금지의무)심의회회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그만 둔 후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실비변상)심의회회의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정보공개책임관)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의 지도·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1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이 조례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정보의 공개여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운영실태 공표) 집행기관은 매년 1월과 7월중에 정보공개 운영상황을 시보 및 정보통신망에 공개한다.

제21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6.5.13 조례 제1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31. 조례 제169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심의회는 개정규정에 따라 동두천시 정보공개 심의회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1. 조례 제2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아동위원회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4. 1.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제14조(아동위원) 조문에 근거하여 아동위원 위·해촉 요건을 수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아동위원 위촉시 “관할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야 한다는 규정 삭제
(안 제17조)

동두천시 조례 제 호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동두천시 장”을 “동두천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아동위원의 위·해촉)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u>관할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이 위촉한다. 1. 2. (생 략) ② (생 략)	제17조(아동위원의 위·해촉) ① ----- ----- <u>동두천시장</u> -----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아동복지법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 총괄), 044-202-3415

보건복지부(아동학대대응과 - 아동학대, 취업제한), 044-202-3449, 3388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 아동복지시설), 044-202-3432, 3437

제14조(아동위원)①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9.>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II. 미첨부 근거 규정

-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1호

III.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IV. 작성자 :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현행조례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9. 21.]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2293호, 2022. 9. 21., 일부개정]

경기도 동두천시(사회복지과), 031-860-2206

제3장 아동위원

제15조(아동위원)법 제14조에 따라 동두천시에 아동위원을 둔다.<개정 2022. 9. 21.>

제16조(구성)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행정복지센터별로 1명 이상으로 한다.

제17조(아동위원의 위·해촉)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시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아동위원을 즉시 해촉한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8조(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역할)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
3. 아동복지에 관하여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제20조(수당)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교육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4. 1. .

제출자 : 동두천시장

□ 제안이유

- 자연휴양림 어울림, 동두천 림스파 준공에 따른 시설물의 정의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 시설물의 운영 및 사용시간, 예약 방법, 사용료 및 감면 기준 범위를 신설
- 내실 있는 시설 운영을 위한 조례 보완 및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객 편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동두천 림스파 위치 및 용어 신설(안 제2조(위치), 제3조(정의))

나. 산림문화 휴양시설(어울림, 림스파) 시설별 운영 및 사용시간 신설(별표 1)

다. 산림문화 휴양시설(어울림, 림스파) 사용료 신설

- 1) 자연휴양림 어울림 숙박요금, 세미나실 사용료 신설(안 별표 2)
- 2) 동두천 림스파 단체스파, 가족스파실 사용료 신설(안 별표 2)
- 3) 자연휴양림 단체(1일 5객실+세미나실) 이용객 시설사용료(세미나실) 및 프로그램 참가료 20% 할인 신설
- 4) 숙박(숲속의집, 휴양관, 어울림) 이용객 림스파 10% 할인 신설(안 별표2)

※ 동두천시 소비정책위원회 사용료 및 감면 결정(2023. 11. 14)

- 5) 숙박시설 단체(1일 5객실+세미나실) 이용객 활성화를 위한 사용예약
(사전) 및 사용허가 조항 신설(안 제14조 3호, 별지)

라. 놀자숲 사용료 기준 정비

- 1) 입장권, 오후권 신설 및 일부 시설 통합권으로 통합(별표3)

마. 자연휴양림 산림복지 소외자 이용 신청 방법 신설

- 1) 별도 지정 객실로 한정하여 우선 예약 시행 (안 제15조의3)

□ 사용료 현황 및 개정(안)

가. 동두천 자연휴양림, 동두천 립스파 사용료 및 감면 개정(안)

구분			기존(원)		변경(안, 원)		비고	
			성수기 주말	비수기 주중	성수기 주말	비수기 주중		
자연 휴양 림	숲속의 집 (10실)	중정형(6인) (76㎡, 5실)	170,000	130,000	190,000	150,000	방1, 화1, 거실	바베큐 가능 (추가2인)
		복층형(8인) (81㎡, 5실)	200,000	160,000	220,000	180,000	방2, 화2, 거실	
	산림 휴양관 (16실)	4인실 (28㎡, 10실)	90,000	70,000	100,000	80,000	원룸, 화1	바베큐 불가 (바베큐장 이용, 추가1인)
		6인실 (47㎡, 5실)	130,000	100,000	150,000	120,000	방2, 화1, 거실	
		20인실 (160㎡, 1실)	350,000	300,000	380,000	330,000	방3, 화2, 거실	바비큐 가능 (추가5인)
	어울림 (16실)	체험형(6인) (76㎡, 8실)	-		280,000	220,000	방2, 히노끼1 (놀이방), 화2, 거실	바비큐 가능 (추가1인) (테라스43㎡)
		일반형(8인) (76㎡, 8실)	-		260,000	200,000	방3, 화2, 거실	바베큐 가능(추가1인) (테라스26㎡)
	어울림 세미나 실 (2실)	124㎡ (50인)	4시간	50,000	삭제(직원 사무실 이전)			
			1일	100,000				
		93㎡ (40인)	-		4시간	50,000	단체할인 ¹⁾ 20%	
			-		1일	100,000		
		400㎡ (150~200인)	-		4시간	150,000		
			-		1일	200,000		
	야영 시설 (테크)	단층형 (6m × 4m)	25,000	20,000	30,000	25,000	4명(6명) /차량1대	1대
		복층형 (7m × 6m)	50,000	40,000	50,000	40,000	4명(6명)/차량1대 → 6명(8명)차량2대	
동두천 립스파		가족스파 (8실)	-		1실	50,000	2시간 (기준4인+2인)	단체할인 20%, 숙박객 할인 (야영테크 제외) 10%
		단체스파 (바데풀 1실, 2시간)	-		성인	15,000	2시간	
			-		청소년 및 군인	10,000	13세 이상~ 19세 미만	
			-		어린이	8,000	36개월 이상 13세 미만	

※ 숙박시설 기준인원 초과 시 1인당 10,000원(야영테크, **림스와 가족스와** 5,000원 추가징수
나. 동두천 치유의 숲 사용료 및 감면 개정(안)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개 인	단 체 (20명 이상, 1일 5객실+세미나실)	
정규치유 프로그램	1인 기준(2시간)	5,000원	4,000원	단체(5객실+세미나실) 이용객 20% 할인

1)일 5객실+세미나실 이용 단체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두천 치유의 숲을”을 “동두천 치유의 숲, 동두천 림스파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동두천 치유의 숲의”를 “동두천 치유의 숲, 동두천 림스파의”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동두천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이란”을 “동두천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 “동두천 림스파”(이하 “림스파”라 한다)란”으로 한다.

제7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동두천 림스파 : 단체 및 가족단위 스파를 통한 휴식 공간 제공

제14조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을 1일에 5객실 이상 및 세미나실을 단체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5조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4조 제3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산림복지소외자 이용 신청) ① 시장은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해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별도 객실을 지정하여 선착순으로 예약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산림복지소외자의 우선 예약 접수 기간 종료 후 미신청된 객실 및 신청 취소된 객실은 선착순 예약방식으로 전환하여 일반인에게 예약받을 수 있다.

별표 1, 2, 3 및 별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개정 2021.5.17.,2021.12.31.,2022. 12. 30.>

동두천 산림문화 휴양시설 시설별 운영 및 사용시간(제8조 관련)

명칭	구분		운영 및 사용시간	비고
동두천 자연휴양림	숙박 시설	숲속의집 산림 휴양관, 어울림	입실일 15:00~퇴실일 11:00	정기 휴무일 : 1.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공휴일이 아닌 날) 2. 1월1일·설날·추석 당일
		야영데크	입실일 13:00~퇴실일 11:00	
	숙박시설 외 시설		09:00~18:00	
놀자숲	놀자센터 및 외부체험시설		10:00~18:00	
유아숲 체험원	프로그램		- 3~10월 : 10:00~18:00 - 동절기(1~2월, 11~12월) 운영 안함	
동두천 치유의 숲	치유센터 등		09:00~18:00	
동두천 림스파	단체스파 (바데풀, 1실)		09:00~18:00	
	가족스파 (8실)		09:00~18:00	
소요 별&숲 테마파크	숙박 시설	카라반	입실일 15:00~퇴실일 11:00	정기 휴무일 : 1. 1월1일·설날·추석 당일
		야영장	입실일 13:00~퇴실일 11:00	
	숙박시설 외 시설		09:00 ~ 18:00	

※ 시장은 시설의 유지·보수, 행사기간, 계절요인 등 필요시 별도의 휴무일 및 운영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시설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휴무일 및 운영시간을 지정한다.)

[별표 2] <개정 2021.5.17.,2021.10.18.,2021.12.31.,2022. 12. 30.>

동두천 자연휴양림, 동두천 림스파 사용료 및 감면 기준 (제11조제1항제1호 관련)

□ 사용료 기준

구분			사용기준	금액(원)		기준인원 (최대인원)	기준차량 (비고)
				성수기 및 주말	비수기 주중		
입장료			09:00~ 18:00	성인 2,000 청소년·군인 1,500 어린이 1,000			
시설 사용료	숲속의집	중정형 (76.08㎡)	1동/1일	190,000	150,000	6명 (8명)	2대
		복층형 (81.46㎡)	1동/1일	220,000	180,000	8명 (10명)	2대
	산림휴양관	4인실 (28㎡)	1실/1일	100,000	80,000	4명 (5명)	1대
		6인실 (47㎡)	1실/1일	150,000	120,000	6명 (7명)	2대
		20인실 (159.9㎡)	1실/1일	380,000	320,000	20명 (25명)	5대
	어울림	체험형 (78㎡)	1실/1일	280,000	220,000	6명 (7명)	2대 (2층)
		일반형 (78㎡)	1실/1일	260,000	200,000	8명 (9명)	2대 (3층)
	야영시설 (데크)	단층형 (6m×4m)	1개소/1일	30,000	25,000	4명 (6명)	1대
		복층형 (7m×6m)	1개소/1일	50,000	40,000	6명 (8명)	2대
	어울림 세미나실	93㎡	4시간	50,000		40명	
			1일	100,000			
		400㎡	4시간	150,000		150~ 200명	
			1일	200,000			
	동두천 림스파	단체스파 (바데풀)	2시간	15,000		30명	성인
				10,000			청소년및군 인
				8,000			어린이
		가족스파	1실/3시간	50,000		4명 (6명)	
프로그램 참가료 (입장료 및 주차료 별도)			1회	실비		-	
주차료		경형	1대/1일	2,000		-	
		소형,중형 (승용,승합)	1대/1일	3,000			
		대형 (버스,화물)	1대/1일	4,000			

- ※ 숙박시설 기준인원 초과 시 1인당 10,000원(야영데크, 림스파 가족스파는 5,000원) 추가징수, 최대인원 초과 입장 불가
- ※ 사용료 기준 이외에도 시장은 시설 및 시책,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한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 36개월 미만 시설사용료 무료, 인원수 산정에는 포함

□ 감면 기준

구분	감면기준
입장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무료 가. 동두천시민 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 라 한다) 시행령 제9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숲속의집·산림휴양관·어울림·야영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각 실의 기준인원에 한함) 라 치유의 숲 등 기타 프로그램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 마. 림스파, 놀자숲 사용자 바. 국가보훈대상자 사. 그 밖에 동두천시장이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20인 이상 단체 : 30%
시설 사용료	1. 동두천시민 : 20% 2. 조례 제14조 제3호에 따라 사용 허가 받은 경우(1일 5객실+세미나실) : 20% (어울림 세미나실, 림스파) 3. 숲속의집·산림휴양관·어울림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 : 10% (림스파) 4. 동두천시 거주 가정 중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 30%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 : 20% 6. 국가보훈대상자 및 군인 : 20% 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 20% 가. 동두천시 또는 동두천시 관내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문화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산림문화 휴양시설 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프로그램 참가료	1. 동두천시민 : 20% 2. 조례 제14조 제3호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경우(1일 5객실+세미나실) : 20% 3. 동두천시 거주 가정 중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 30% 4.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무료
주차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 무료 가. 국민 및 그 수행자의 차량 나.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의 차량 다.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라. 숲속의집·산림휴양관·어울림·야영시설을 사용하는 사람(각 실의 기준차량에 한함) 마. 치유의 숲 등 기타 프로그램, 림스파·놀자숲을 사용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 | | |
|--|---|
| | 바.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사. 국가보훈대상자가 탑승한 보훈대상자 소유의 차량
아.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 동두천시 등록차량
차. 전기자동차
카. 그 밖에 동두천시장이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주차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 50% 할인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

[별표 3] <개정 2021.5.17.,2021.10.18.,2021.12.31.,2022. 12. 30.>

놀이숲 사용료 및 감면 기준 (제11조제1항제2호 관련)

□ 사용료 기준

구분		금액(원)	비고
입장권		10,000	이용권 미 구매자 (36개월 이상)
실내	놀이센터 종일 이용권 (10:00~18:00)	30,000	- 실내 모든 시설 이용 가능
	놀이센터 오후 이용권 (14:00~18:00)	24,000	
실외	실외 종일 이용권 (10:00~18:00)	20,000	- 실외 모든 시설 이용 가능 (익스트림 슬라이드 제외)
	실외 오후 이용권 (14:00~18:00)	16,000	
	익스트림 슬라이드	5,000	- 1회권
실내·외 통합 종일 이용권		50,000	- 실·내외 모든 시설 이용가능
회원권 (구매일로부터 6개월간 사용가능)		300,000	- 유효기간 6개월 - 타 할인과 중복불가
기타 단체 (학교단체, 사회복지시설 등)		별도 협의	

- ※ 위 사용료 기준 이외에도 시장은 시설 및 시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시설을 위탁 중인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 기준의 $\pm 50\%$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 입장료, 프로그램 참가료, 주차료는 [별표 2]의 동두천 자연휴양림 사용료 및 감면 기준을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산림문화 휴양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	단체명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사용시설		☐ 세미나실 ☐ 문화 및 체험행사 ☐ 잔디광장 ☐ 숙박시설+세미나실 ☐ 기타()		
사용목적			사용인원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료		※ 사용료는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산정됩니다.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 시설 이용 계획(조례 제15조 사용허가) - 단체(1일 5객실+세미나실) : 운영계획서(필수)(행사계획 및 세부일정 등) ☐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 증명서류 ☐ 부대시설 설치하는 경우 : 설계도면 등 ※ 해당란에 V표하기 바랍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위치) 산림문화 휴양시설 (동두천 자연휴양림, 놀자숲, 동두천 유아숲체험원, 소요 별&숲테마파크, 소요산 유아숲체험원, 동두천 나눔목공소, 동두천 상상공작소, <u>동두천 치유의 숲</u>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는 각 호와 같다.	제2조(위치) ----- ----- ----- ----- ----- <u>동두천 치유의 숲</u> , <u>동두천 립스파</u> 를 ----- -----.
1. 동두천 자연휴양림과 동두천 유아숲체험원, 동두천 나눔목공소, <u>동두천 치유의 숲</u> 의 위치는 경기도 동두천시 탑동동산16번지 일원으로 한다.	1. ----- ----- ----- <u>동두천 치유의 숲</u> , <u>동두천 립스파</u> 의 -----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
1. “ <u>동두천 자연휴양림</u> ”(이하 “ <u>자연휴양림</u> ”이라 한다)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조성된	1. “ <u>동두천 자연휴양림</u> ”(이하 “ <u>자연휴양림</u> ”이라 한다), “ <u>동두천 립스파</u> ”(이하 “ <u>립스파</u> ”라 한다)란 -----

휴양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 16. (생략)

제7조(시설별 목적 및 사업) 산림
문화 휴양시설의 시설별 목적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신 설>

제14조(사용허가) 산림문화 휴양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미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 2. (생략)

<신 설>

3. (생략)

제15조(사용예약 및 허가의 방법)

-----.

2. ~ 16. (현행과 같음)

제7조(시설별 목적 및 사업) -----

-----.

1. ~ 7. (현행과 같음)

8. 동두천 립스파 : 단체 및 가
족단위 스파를 통한 휴식 공
간 제공

제14조(사용허가) -----

-----.

1. · 2. (현행과 같음)

3.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을 1
일에 5객실 이상 및 세미나실
을 단체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15조(사용예약 및 허가의 방법)

① ~ ④ (생 략)

⑤ 시장은 산림문화 휴양시설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부 객실에 대해 예약
제외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으
며 예약 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로 한정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⑥ (생 략)

<신 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4조제3호에 따라 사용허
가를 받은 경우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의3(산림복지소외자 이용
신청) ① 시장은 산림복지서비
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산림복
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
에 대해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
여 별도 객실을 지정하여 선착
순으로 예약자를 선정할 수 있
다.

② 산림복지소외자의 우선 예약
접수 기간 종료 후 미신청된 객
실 및 신청 취소된 객실은 선착
순 예약방식으로 전환하여 일반
인에게 예약받을 수 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약칭: 산림휴양법)

[시행 2023. 7. 25.] [법률 제19571호, 2023. 7. 25., 타법개정]

산림청(산림휴양등산과-총괄) 042-481-4211, 4212
산림청(산림휴양등산과-산림문화) 042-481-4215, 4217
산림청(산림휴양등산과-숲길정책) 042-481-8876, 4122
산림청(산림휴양등산과-산림레포츠) 042-481-4106, 4150
산림청(산림교육치유과-산림치유) 042-481-4124, 8877
산림청(산림복지정책과-숲경영체험림) 042-481-1815, 181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문화·휴양”이라 함은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총체적 생활양식과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을 말한다.
2. “자연휴양림”이라 함은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II. 미첨부 근거 규정

-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
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III.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시행 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IV. 작성자 :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붙임 3

현행조례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경 제문화국 관광휴양과) [시행 2022. 2. 7.]

(제정) 2019.11.25 조례 제2102호

(일부개정) 2020.06.01 조례 제2142호

(일부개정) 2021.05.17 조례 제2192호

(일부개정) 2021.05.17 조례 제2192호

(일부개정) 2021.10.18 조례 제2224호

(일부개정) 2021.12.31 조례 제2246호

(일부개정) 2022.02.07 조례 제2274호

(일부개정) 2022.12.30 조례 제2319호

(일부개정) 2023.07.03 조례 제235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1.,2021.5.17.>

제2조(위치) 산림문화 휴양시설(동두천 자연휴양림, 놀자숲, 동두천 유아숲체험원, 소요 별&숲 테마파크, 소요산 유아숲체험원, 동두천 나눔목공소, 동두천 상상공작소, 동두천 치유의 숲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는 각 호와 같다.<개정 2020.6.1.,2021.5.17.,2021.10.18.>

1. 동두천 자연휴양림과 동두천 유아숲체험원, 동두천 나눔목공소, 동두천 치유의 숲의 위치는 경기도 동두천시 탑동동 산16번지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1.5.17.,2021.10.18.>
2. 놀자숲의 위치는 경기도 동두천시 탑동동 산33번지 일원으로 한다.
3. 소요 별&숲 테마파크와 소요산 유아숲체험원, 동두천 상상공작소의 위치는 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 15번지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0.6.1.,2021.5.1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두천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조성된 휴양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 7. 3.>
2. “놀자숲”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조성된 놀이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동두천 유아숲체험원”과 “소요산 유아숲체험원”(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유아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조성된 교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6.1.>

4. “소요 별&숲 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5. “동두천 나눔목공소”와 “동두천 상상공작소”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1. 5. 17.>

6. “동두천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라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신설 2021. 10. 18.>

7.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8.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9.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의 전일을 말한다.<개정 2021. 5. 17.>

10. “비수기 주중”이란 성수기 및 공휴일의 전일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간을 말한다.

11.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12.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부터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 12. 30.>

1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4. “군인”이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전투·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5. “어른”이란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6. “참가료”란 산림문화 휴양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 및 참가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신설 2021. 5. 17.>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문화 휴양시설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설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재산 손실 및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등의 단체 관람객과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은 주관단체, 기관 또는 사용자에게 있다.

제6조(운영 및 관리의 위탁 등) ① 산림문화 휴양시설은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목적 또는 용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방법, 절차, 해지, 사용수익허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 및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며, 「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동두천시장 인증 농특산물을 생산·전시·판매 할 경우 수익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20.6.1.>

제2장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운영

제7조(시설별 목적 및 사업)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시설별 목적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휴양림

- 가.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휴양 공간 및 숙박시설 제공
- 나. 산림휴양공간과 연계한 산림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다. 그 밖에 산림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행사 등 필요한 사업 추진

2. 놀자숲

- 가.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레저 및 야외 놀이시설 제공
- 나. 사계절 즐길 수 있는 대형 실내 놀이시설 제공

3. 유아숲체험원

- 가. 유아에 대한 자연체험 학습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
- 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산림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테마파크

- 가. 자연경관을 활용한 쾌적한 휴식 공간 및 숙박시설 제공
- 나. 숲 체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제공

5. 동두천 나눔목공소<신설 2021. 5. 17.>

- 가. 숲의 부산물을 재활용한 숲의 자원화 실현 및 목재 이용문화 활성화 기여
- 나. 대상별 목공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동두천 상상공작소<신설 2021. 5. 17.>

가. 목재 이용문화 활성화를 위한 체험시설 제공

나. 대상별 목공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동두천 치유의 숲<신설 2021. 10. 18.>

가. 산림치유인자를 활용한 인체면역증진의 산림치유공간 제공

나. 숲 자원을 활용한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제8조(운영 및 사용시간)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시설별 운영 및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장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위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할 경우<개정 2020.6.1.>

2.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및 산림 병충해 방제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할 경우

4. 산림생태 및 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장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제한할 경우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수칙의 게시) 시장은 쾌적한 산림문화 휴양시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이용객 사용수칙과 사용요금표 등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①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프로그램 참가료, 주차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와 그에 대한 감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

1. 자연휴양림 사용료 및 감면 기준 : 별표 2 <개정 2021. 12. 31.>
2. 놀자숲 사용료 및 감면 기준 : 별표 3 <개정 2021. 12. 31.>
3. 유아숲체험원 사용료 및 감면 기준 : 별표 4 <개정 2021. 12. 31.>
4. 테마파크 사용료 및 감면 기준 : 별표 5 <개정 2021. 12. 31.>
5. 치유의 숲 사용료 및 감면 기준 : 별표 6 <신설 2021. 12. 31.>

② 시장은 개장 전 시범운영 또는 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동두천시청 및 동두천시의회 공직자, 동두천시민, 행사관계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0.6.1.>

제12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 납부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일 방문객의 경우 현금납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예약) 산림문화 휴양시설에 방문하거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미리 시설의 사용예약을 하여야 한다.

1. 20명 이상의 단체가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2. 숙박시설(야영시설을 포함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체험 등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13조의2(매매·교환 등 금지) ① 산림문화 휴양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그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문화 휴양시설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시설 이용 시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30.]

제14조(사용허가) 산림문화 휴양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미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문화 및 체험행사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2. 자연휴양림의 세미나실 및 잔디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15조(사용예약 및 허가의 방법) ① 제13조의 사용예약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야 하며, 제14조의 사용허가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숙박시설의 사용예약은 매주 화요일 6주 전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가능하며, 성수기의 경우에는 추첨제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6.1.>

③ 시장은 동두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산림휴양서비스 확대 제공을 위하여 숙박시설 중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우선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2. 7.>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첨제와 제3항에 따른 지역주민우선예약제를 실시하는 경우 미리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산림문화 휴양시설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부 객실에 대해 예약제외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으며 예약 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21.10.18.>

1. 동두천시 또는 동두천시 관내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문화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산림문화 휴양시설 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⑥ 숙박시설의 사용예약은 1인당 1일 3건 예약할 수 있으며, 1건 당 3박 4일까지 예약할 수 있다.

제15조의2(관리자 예약)① 제15조제5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날짜, 시설물의 이름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본조신설 2022. 12. 30.]

제16조(사용예약 및 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예약 및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타인의 이름으로 예약이나 허가를 신청한 경우
2. 시설을 용도 이 외로 사용하는 경우
3. 예약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시설을 파손하거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사용료의 반환) ① 삭제 <2021. 10. 18.>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반환 및 배상하며, 이 경우 반환에 드는 결제대행업체 및 금융기관 수수료 등을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개정 2020.6.1.>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개정 2021. 10. 18.>
2. 시장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시설 운영을 중단한 경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을 휴장하거나 제한한 경우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숙박업 기준)에 따라 반환 및 배상 <개정 2021. 10. 18.>

3. 사용자가 시설 사용 예약을 사전에 취소한 경우 : 별표 7에 따라 반환 <개정 2021. 10. 18., 2021. 12. 31.>

4. 사용자가 프로그램 예약을 사전에 취소한 경우 : 별표 8에 따라 반환 <신설 2021. 12. 31.>

제18조(예비객실의 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1. 숙박시설 이용객이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
2. 숙박시설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의2(교육 및 강사 등) ① 시장은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위촉 해제하거나 초빙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강하거나 강의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
3.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폐강이 되는 경우

④ 제3항의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해촉된 강사는 동두천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강사로 재위촉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21. 10. 18.>

제3장 보칙

제19조(홍보상품 제작·판매) 시장은 산림문화 휴양시설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인쇄물 포함)을 제작·판매할 수 있으며, 상품의 가격은 제작 실비를 반영하여 정한다.<신설 2020. 6. 1.>

제20조(세입세출 및 수입금 보관) ①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사용료 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관리와 유지 보수에 필요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제19조에서 이동<2020.6.1.>]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2020.6.1.>]

부 칙<2019. 11. 25. 조례 제2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6. 1. 조례 제2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5. 17. 조례 제2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18. 조례 제2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31. 조례 제2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2. 7. 조례 제2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2. 30. 조례 제2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7. 3. 조례 제2359호>(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1.5.17.,2021.12.31.,2022. 12. 30.>

동두천 산림문화 휴양시설 시설별 운영 및 사용시간
(제8조 관련)

명칭	구분		운영 및 사용시간	비고
동두천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숲속의집 산림 휴양관	입실일 15:00~퇴실일 11:00	정기 휴무일 : 1.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공휴일이 아닌 날) 2. 1월1일·설날·추석 당일
		야영데크	입실일 13:00~퇴실일 11:00	
	숙박시설 외 시설		09:00~18:00	
놀자숲	놀자센터 및 외부체험시설		10:00~21:00	
유아숲 체험원	프로그램		- 3~10월 : 10:00~18:00 - 동절기(1~2월, 11~12월) 운영 안함	
동두천 치유의 숲	치유센터 등		09:00~18:00	
소요 별&숲 테마파크	숙박시설	카라반	입실일 15:00~퇴실일 11:00	정기 휴무일 : 1. 1월1일·설날·추석 당일
		야영장	입실일 13:00~퇴실일 11:00	
	숙박시설 외 시설		09:00 ~ 18:00	

※ 시장은 시설의 유지·보수, 행사기간, 계절요인 등 필요시 별도의 휴무일 및 운영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시설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휴무일 및 운영시간을 지정한다.)

[별표 2] <개정 2021.5.17.,2021.10.18.,2021.12.31.,2022. 12. 30.>

동두천 자연휴양림 사용료 및 감면 기준

(제11조제1항제1호 관련)

□ 사용료 기준

구분			사용기준	금액(원)		기준인원 (최대인원)	기준차량
				성수기 및 주말	비수기 주중		
입장료			09:00~ 18:00	성인 2,000 청소년·군인 1,500 어린이 1,000			
시설 사용료	숲속의집	중정형 (76.08㎡)	1동/1일	170,000	130,000	6명 (8명)	2대
		복층형 (81.46㎡)	1동/1일	200,000	160,000	8명 (10명)	2대
	산림휴양관	4인실 (28㎡)	1실/1일	90,000	70,000	4명 (5명)	1대
		6인실 (47㎡)	1실/1일	130,000	100,000	6명 (7명)	2대
		20인실 (159.9㎡)	1실/1일	350,000	300,000	20명 (25명)	5대
	야영시설 (데크)	단층형 (6m×4m)	1개소/1일	25,000	20,000	4명 (6명)	1대
		복층형 (7m×6m)	1개소/1일	50,000	40,000	4명 (6명)	1대
	세미나실	124㎡	4시간	50,000		50명	별도 협의
			1일	100,000			
프로그램 참가료 (입장료 및 주차료 별도)			1회	실비		-	
주차료		경형	1대/1일	2,000		-	
		소형, 중형 (승용, 승합)	1대/1일	3,000			
		대형 (버스·화물)	1대/1일	4,000			

※ 숙박시설 기준인원 초과 시 1인당 10,000원(야영데크는 5,000원) 추가징수,
최대인원 초과 입장 불가

※ 사용료 기준 이외에도 시장은 시설 및 시책,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한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감면 기준

구분	감면기준
입장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무료 가. 동두천시민 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 라 한다) 시행령 제9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숲속의집·산림휴양관·야영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각 실의 기준인원에 한함) 라. 놀자숲 사용자 마. 국가보훈대상자 바. 그 밖에 동두천시장이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20인 이상 단체 : 30%
시설 사용료	1. 동두천시민 : 20% 2. 동두천시 거주 가정 중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 30%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 : 20% 4. 국가보훈대상자 및 군인 : 20%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 20% 가. 동두천시 또는 동두천시 관내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문화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산림문화 휴양시설 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프로그램 참가료	1. 동두천시민 : 20% 2. 동두천시 거주 가정 중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 30% 3.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무료
주차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 무료 가. 국빈 및 그 수행자의 차량 나.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의 차량 다.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라. 숲속의집·산림휴양관·야영시설을 사용하는 사람(각 실의 기준차량에 한함) 마. 놀자숲을 사용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바.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사. 국가보훈대상자가 탑승한 보훈대상자 소유의 차량 아.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 동두천시 등록차량 차. 전기자동차 카. 그 밖에 동두천시장이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주차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 50% 할인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별표 3] <개정 2021.5.17.,2021.10.18.,2021.12.31.,2022. 12. 30.>

놀이숲 사용료 및 감면 기준
(제11조제1항제2호 관련)

□ 사용료 기준

구분			금액(원)	비고
실내	놀이센터 이용권 (10:00~19:00)		30,000	- 실내 모든 시설 이용 가능
	편 클라임 (입체구조물 3종)	버티컬 드롭	5,000	- 1회권
		슬라이드		
		스태어웨이 투		
		헤븐	5,000	
		(천국의 계단) 립 오브 페이스	5,000	
	(밌음의 도약)			
실외	실외 이용권 (10:00~19:00)		20,000	- 실외 모든 시설 이용 가능
	익스트림 슬라이드		5,000	- 1회권
	실내 · 외 통합 이용권		50,000	- 실 · 내외 모든 시설 이용 가능
회원권 (구매일로부터 6개월간 사용가능)			300,000	- 유효기간 6개월 - 타 할인과 중복불가
기타 단체 (학교단체, 사회복지시설 등)			별도 협의	

※ 위 사용료 기준 이외에도 시장은 시설 및 시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시설을 위탁 중인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 기준의 ±50%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입장료, 프로그램 참가료, 주차료는 [별표 2]의 동두천 자연휴양림 사용료 및 감면 기준을 따른다.

□ 감면 기준

구분	감면기준
사용료	1. 다음 각 호에 대한하는 사람 : 무료 가. 36개월 미만의 영아 나.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동두천 시민 : 20% 3.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객 : 20%

※ 감면대상 증명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현장에서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등 확인)

※ 감면받는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한다.

[별표 4] <개정 2021.10.18.,2021.12.31.>

유아숲체험원 사용료 및 감면 기준
(제11조제1항제3호 관련)

구분	사용료 기준
프로그램 참가료	무료(다만, 재료비는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 입장료 및 주차료는 [별표 2]의 동두천 자연휴양림 사용료 및 감면 기준을 따른다.

[별표 5] <개정 2021.5.17.,2021.10.18.,2021.12.31.,2022. 12. 30.>

소요 별&숲 테마파크 사용료 및 감면 기준

(제11조제1항제4호 관련)

시설 종류		사용기준	금 액(원)		기준인원 (최대인원)	기준차량	비고
			성수기 및 주말	비수기 주중			
시설 사용료	카라반 (9×3×3m)	1동/1일	150,000	90,000	6인 (8인)	2대	
	야영장 (8×10m)	1개소/1일	50,000	40,000	8인 (10인)	2대	
	야영장 (6×8m)	1개소/1일	30,000	25,000	6인 (8인)	2대	
프로그램 참가료	상상공작소 (개인) 상상공작소 (단체)	1회/1일	실비(재료비 포함)				

- ※ 시설별 기준인원 초과 시 1인당 10,000원 추가징수, 최대인원 초과 입장 불가
- ※ 사용료 기준 이외에도 시장은 시설 및 시책,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한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감면 기준

구분	감면기준
시설 사용료	1. 동두천시민 : 20% 2. 동두천시 거주 가정 중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 30%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 : 20% 4. 국가보훈대상자 및 군인 : 20%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 20% 가. 동두천시 또는 동두천시 관내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문화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산림문화 휴양시설 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프로그램 참가료	1. 동두천시민 : 20% 2. 동두천시 거주 가정 중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 30% 3.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무료

※ 감면 대상 증명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현장에서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등 확인)

※ 감면받는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한다.

※ 국가보훈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별표 6] <신설 2021. 12. 31.>

동두천 치유의 숲 사용료 및 감면 기준

(제11조제1항제5호 관련)

☐ 사용료 기준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개 인	단 체 (20명 이상)	
정규치유 프로그램	1인 기준(2시간)	5,000원	4,000원	
특별치유 프로그램	1인 기준	실비		

※ 프로그램종류 : 족욕테라피, 온열테라피, 건강측정 등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운영 가능)

※ 사용료 기준 이외에도 시장은 시설 및 시책,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한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 감면 기준

구분	감면기준
프로그램 참가료	1. 동두천시민 : 20% 2. 동두천시 거주 가정 중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 30% 3.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무료

※ 감면대상 증명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현장에서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등 확인)

※ 감면받는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한다.

[별표 7] <개정 2021.5.17.,2021.10.18.,2021.12.31.>

예약취소에 따른 시설별 사용료 반환 기준(제17조제2항제3호 관련)

구분	반환 기준		비 고
	기간(사용예정일 기준)	비율(총요금 기준)	
비수기	계약체결 당일(24시간 이내) 취소	100% 반환	
	5일 전까지 취소	100% 반환	
	3일 전까지 취소	10% 공제 후 반환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	20% 공제 후 반환	
성수기	10일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 당일(24시간 이내) 취소	100% 반환	
	7일 전까지 취소	10% 공제 후 반환	
	5일 전까지 취소	20% 공제 후 반환	
	3일 전까지 취소	30% 공제 후 반환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	40% 공제 후 반환	

[별표 8] <신설 2021. 12. 31.>

프로그램 예약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기준(제17조제2항4호 관련)

구분	반환 기준	
	기간(사용예정일 기준)	비율(총요금 기준)
프로그램 참가료	10일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 당일(24시간 이내) 취소	100% 반환
	7일 전까지 취소	10% 공제 후 반환
	5일 전까지 취소	20% 공제 후 반환
	3일 전까지 취소	30% 공제 후 반환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	40% 공제 후 반환
	프로그램 시작시간 후	반환 불가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4. 1.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제안이유

- 공영주차장 중 2시간 이내 무료 주차 허용 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상패동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기준을 개선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대로 환불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정기 주차 이용자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환불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준용하여 환불 규정 명확화(안 제6조)
- 나. 운영 실정을 반영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개정 (별표1)
 - 2시간 이내 무료 주차 허용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기준 신설
 - 상패동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의 이용 증대를 위해 중·대형차 주차구획에 한하여 1구획당 차량 2대를 기준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월 정기주차권 발행 후 주차장의 사정 및 이용자의 사정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환불한다.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차장 이용 중지 또는 폐지 등 주차장의 사정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2. 월 정기주차 이용자의 이사, 이직, 장기출장, 차량의 수리 등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통지한 익일부터 일할로 환산한 미사용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의 80퍼센트를 약정기간의 종료 익일에 환불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 영 주 차 장 주 차 요 금 표

(제5조 관련)

○ 주차요금

－ 노상 및 노외주차장

주차장종류	급지및차종	1구획 주차요금(원)			1일주차 요 금	월 정 기 주차요금
		최초30분 까 지	30분초과 10분마다	2시간초과 15분마다		
노상주차장	1급지	700	300	700	-	-
	2급지	500	200	500	-	-
노외주차장	1급지	600	200	-	6,000	50,000
	2급지	500	200	-	4,000	40,000
2시간 무료 주차 허용 노외주차장	2급지에 한함	1구획 주차요금(원)				
		최초 2시간 이내		무료 이후 초 과 10분 마다	비고	
		무료		400	1일 주차요금 및 월 정기 주차요금은 2급지 요금 적용	

－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주차장종 류	차종	1구획 주차요금(원)		1일주차 요 금	월 정 기 주차요금
		최초30분 까 지	30분초과 10분마다		
대형자동 차 공영주 차장	소형	500	200	4,000	40,000
	중형·대형	600	200	8,000	100,000

<비고> 1주차 구획에 중·대형 차량 1대와 소형 차량 1대를 교대로 주차할 경우 월 정기주차
요금에 한하여 중·대형 차량 1대를 기준으로 요금을 징수한다.

※ 차량(차종)의 구분은 비고 7 참조

○ 비 고

1. 이 주차요금은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차장 운영에 따른 적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가. 노상주차장 운영시간

－ 3월 ~ 10월 : 08:00 ~ 20:00

－ 11월 ~ 2월 : 09:00 ~ 19:00

나. 노외주차장 운영시간

－ 주간 : 09:00 ~ 20:00

－ 야간 : 20:00 이후 ~ 익일 09:00전까지

3. 급지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 참작,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가. 1급지: 상업지역 중 교통혼잡역세권(지행역 주변)

나. 2급지: 1급지를 제외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4. 시장은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5. 주차시간이 10분 미만일 경우 10분으로 하며, 주차 카드 및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이용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할 경우에는 이미 1시간이 초과한 것으로 본다.

6. 주차 차량의 제한 : 노상주차장 및 1급지·2급지 노외주차장에서는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을 주차할 수 없다.

7. 차량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함.)

가. 소형: 승용자동차, 소형 승합자동차, 소형 화물자동차, 소형 특수자동차

나. 중형: 중형 승합자동차, 중형 화물자동차, 중형 특수자동차

다. 대형: 대형 승합자동차, 대형 화물자동차, 대형 특수자동차

8. 1급지 노상주차장에서의 1일 주차요금 및 월정기 주차요금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노상장기주차장 억제하기 위해 2시간초과 15분마다 100퍼센트의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9. 주차요금은 1구획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며,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점용 구획 수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게시표시를 설치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①·② (생략)	제6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주차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환불한다.	③ ----- - -- ----. 다만, 월 정기주차권 발행 후 주차장의 사정 및 이용자의 사정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환불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1. 주차장 이용 중지 또는 폐지 등 주차장의 사정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기간의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2. 월 정기주차 이용자의 이사, 이직, 장기출장, 차량의 수리 등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통지한 익일부터 일할로 환산한 미사용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의 80퍼센트를 약정기간의 종료 익일에 환불한다.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

(제5조 관련)

○ 주차요금

주차장종류	급지및차종	1구획 주차요금(원)			1일주차 요금	월 정 기 주차요금
		최초30분 까	30분초과 지	2시간초과 10분마다 15분마다		
노상주차장	1급지	700	300	700	-	-
	2급지	500	200	500	-	-
노외주차장	1급지	600	200	-	6,000	50,000
	2급지	500	200	-	4,000	40,000
대형주차장 공영주차장	소형	500	200	-	4,000	40,000
	중형·대형	600	200	-	8,000	100,000

※ 차량(차종)의 구분은 비고 7 참조

[별표 1]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

(제5조 관련)

○ 주차요금

노상 및 노외주차장

주차장종류	급지및차종	1구획 주차요금(원)			1일주차 요금	월 정 기 주차요금
		최초30분 까	30분초과 지	2시간초과 10분마다 15분마다		
노상주차장	1급지	700	300	700	-	-
	2급지	500	200	500	-	-
노외주차장	1급지	600	200	-	6,000	50,000
	2급지	500	200	-	4,000	40,000
2시간 무료 주차허용 노외주차장	2급지에 한함	1구획 주차요금(원)				
		최초 2시간 이내	무료 이후 초과 10분 마다	비고		
		무료	400	1일 주차요금 및 월 정기 주차요금은 2급 지 요금 적용		

노상 및 노외주차장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주차장종류	차종	1구획 주차요금(원)		1일주차 요금	월 정 기 주차요금
		최초30분 까	30분초과 지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소형	500	200	4,000	40,000
	중형·대형	600	200	8,000	100,000

<비고> 1주차 구획에 중·대형 차량 1대와 소형 차량 1대를
교대로 주차할 경우 월 정기주차요금에 한하여 중·대형
차량 1대를 기준으로 요금을 징수한다.

※ 차량(차종)의 구분은 비고 7 참조

(이하 현행 유지)

주차장법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62호, 2021. 12.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교통과) 044-201-3811, 3814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6. 1. 19.>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 1. 19.>

[전문개정 2010. 3. 22.]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II. 미첨부 근거 규정

-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
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III.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시행 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IV. 작성자 :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시행 2023. 9.18.]

[전문개정 1998. 1. 19] 조례 제 924호

개정 1998. 11. 10 조례 제 965호

1999. 4. 16 조례 제989호

1999. 10. 11 조례 제1015호

2001. 7. 9 조례 제1092호

2002. 1. 22 조례 제1115호

2003. 6. 12 조례 제1176호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

2003. 10. 23 조례 제1193호

(일부개정) 2005.01.10 조례 제1237호

(일부개정) 2006.11.06 조례 제1330호

(일부개정) 2008.06.16 조례 제1434호

(일부개정) 2010.02.11 조례 제1513호

(일부개정) 2012.12.31 조례 제1642호

(일부개정) 2015.10.30 조례 제1802호

(일부개정) 2016.04.11 조례 제1841호

(일부개정) 2018.02.05 조례 제1985호

(일부개정) 2018.08.13 조례 제2002호

(일부개정) 2019.04.08 조례 제2054호

(일부개정) 2020.01.01 조례 제2108호

(일부개정) 2021.07.29 조례 제2208호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12.30 조례 제2321호

(일부개정) 2023.09.18 조례 제238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 소재한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 :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동두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8.2.5.>

2. 민영주차장 : 법 제12조에 따라 시장 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99.10.11>

제 2 장 공영 및 민영주차장

제4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전에 주차장의 명칭, 위치, 규모, 사용시간, 주차요금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 98. 11. 10>

②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그 설치 목적에 따라 주차장 관리·운영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공영주차장의 설치 및 민영주차장의 설치 통보접수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99.10.11>

1. 주차장 설치대상 토지의 이용현황

2. 해당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개정 2018.2.5.>

3. 주차수요의 장기예측

④ 시장이 공영주차장을 설치 하였거나 민영주차장의 설치 통보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주차장설치통보접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99.10.11>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98. 11. 10>

②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공영유료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과하며, 별표 1에 의한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다.

<개정 98.11.10, 2006.11.6.,2018.2.5.>

1. 주차요금을 납부치 않고 도주한 경우

2.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입 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내에 주차요금을 납부치 않은 경우 <개정 2006.11.6>

3. 주차장을 주차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6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① 공영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징수 방법을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8.

11. 10., 2018.2.5.>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 ② 공영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징수한다. <개정 98. 11. 10., 2018.2.5.>

1. 월정기권 및 1회 주차권 발행시

2. 주차장운영 종료 1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 ③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주차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환불한다.< 개정 2018.2.5.>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 ④ 공영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 영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으며, 1회 주차권 및 정기권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개정 98. 11. 10>

- ⑤ 제5조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며 고지방법 및 징수방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8.2.5.>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공영주차장 이용차량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개정 2006. 11.6>

1. 면제대상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가운전 차량 및 동승차량
<개정 2023. 9. 18.>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가운전차량 및 동승차량<개정 2018.2.5.>

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가운전차량 및 동승차량<개정 2018.2.5.>

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 시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공공 목적의 행사를 위해 사용하고자 할 때

(2) 공무수행을 위한 차량

(3) 공휴일 이용차량

(4) 국가 또는 도 시책에 의할 때(국가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성실모범납세필증 부착 차량 등)

2. 경감대상

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 및 동승차량 :

50% 감면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경형자동차 : 50% 감면

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차량 : 50% 감면

라. 자동차의 소유주가 다자녀(미성년 2자녀 이상) 가구임을 증명하는 자동차 : 50% 감면<신설

2018.8.13.>

마. 시장이 실시하는 시책에 참여 하는 자동차 : 50% 감면

1) 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2) 모자보건수첩 등 임신부임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차량

3) 경기도 및 동두천시 우수 자원 봉사자증을 제시하는 차량

4) 「동두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증을 제시하는 차량 등<개정 2019.4.8.>

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전기자동차 : 2시간 무료 이후 50% 감면<신설 2019.4.8.>

사. 원도심 및 재래시장 활성화, 주민편의 도모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영주차장 2시간 이내 무료주차 허용<신설 2019.4.8.><개정 2022. 12. 30.>

아.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차량 : 50% 감면<신설 2021. 7. 29.>

② 제1항제1호의 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의 감면은 신청에 의하며,

감면방법은 따로 정한다. <개정 99.10.11, 2006.11.6.,2018.2.5.,2018.8.13.>

제8조(주차거부금지) 공영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22. 12. 30.>

1. 주차장의 위치 및 특성에 따라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 차량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제6조제2항의 후단 규정에 의한 사전 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한 경우
6. 그 밖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신설 2022. 12. 30.>

제8조의2(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①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해당 주차장 및 그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공영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거나, 공영주차장 관리자 근무시간 이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4.8.>

제9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 규격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으며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이용자 주의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개정 2018.2.5.>

② 노외주차장의 내부에 설치할 안내표지의 규격 및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외부에 설치할 안내표지 및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개정 99.10.11>

③ 주차장 위치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 등의 기준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의2(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 규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중 「도시철도법」 제3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

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의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

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제16조제4항(같

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 받은 개선필요 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 승차인원/210 ×

철도연장(km)/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

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12.31]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 제2항 및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이 공영주차장

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2.5.>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삭제 98. 11. 10>
3. <삭제 2012.12.31>
4. <삭제 2012.12.31>
5. 공공시설의 관리에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과 사회단체 <신설 2012.12.31>

② 제1항의 조건을 구비한 자가 수탁관리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개인의 경우 최근 재산세 납부증명서, 그 밖에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98. 11. 10>
3.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업참여결정서류 <개정 98. 11. 10>

③ 제2항에 의한 수탁관리자의 선정방법과 수탁관리자가 시에 납부 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4.16> <개정 2012.12.31>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	------------	------------	------------

--	--	--	--

제1항제1호 이외의	수의계약	제10조제5항 규정에	3개월 단위로 선납
------------	------	-------------	------------

비영리 공익법인		의한 위탁대행료 산출	
----------	--	-------------	--

		금액	
--	--	----	--

--	--	--	--

--	--	--	--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
--------	------	------	---

--	--	--	--

--	--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수탁관리자를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2. 계약보증금 납부 및 시기

3. 관리수탁시 주차요금 징수방법

4. 해약 조건

5. 그 밖에 공영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⑤ 제3항에 따른 위탁대행료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당해 토지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 또는 임야일 경우 인근지의 평균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신설 2012.12.31>

1. 노상주차장 : 1대당 주차장구획면적(m^2) $\times$ 면수 $\times$ 해당(또는 인근)토지의개별공시지가의합(원)/필
지수 $\times 25/1,000 \times$ 점용기간(년) $\times$ 지수 $\times$ (주차장운영시간/24) $\times$ (운영일수/365) <

2. 노외주차장 : 점용면적(m^2) $\times$ 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원) $\times 25/1,000 \times$ 점용기간
(년) $\times$ 지수 $\times$ (주차장운영시간/24) $\times$ (운영일수/365)

3. 건물식(지하식포함)주차장 : 1대당주차장구획면적(m^2) $\times$ 면수 $\times$ 해당토지개별공시지가
(원) $\times 25/1,000 \times$ 기간(일) $\times$ 지수

※ 지수 = 각급지별 1회 주차장요금(30분기준) $\div$ 1급지 1회 주차장요금(30분기준)<개정 2015. 10. 30.>

제11조(부설주차장의 설치 및 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등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 하여야 한다.<개정 2003.6.12., 2018.2.5.>

② 제1항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신고는 주차장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6.16>

④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승강기, 기타 자동차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설물의 구조안전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00분의 3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3.10.23, 개정 2006.11.6>

제11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의 기계식 주차장설치 기준은 주차대수 100대 초과 하는 경우(별표 2)에 한하여, 총 주차대수의 20퍼센트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0. 1.1.>

제12조(부설주차장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2018.2.5.>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주차장은 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2015. 10. 30.>

제13조 <삭제 99.10.11>

제14조 <삭제 2001. 7. 9>

제15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무상사용기간)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

10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무상사용기간은 납부된 주차장 설치비용을 당해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기준에 의한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본조개정 2001. 7. 9.,2018.2.5.>

제15조의2(주차장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① 법 제19조제9항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 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1면당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 포함)에 설치의무자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토지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주차구획1면은 18평방미터로 한다. 다만, 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평방미터로 한다.

② 법 제19조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자가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 받지 못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대납금액은 100분의25를 감액하며 금액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토지가격 포함) 설치의 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토지가격과 주차구획 면적은 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와 같다.<본조신설 2001. 7. 9.,2018.2.5.>

제15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

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철거할 수 있다.

1.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화(老朽化)·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로부터 5년 이상으로서 영 제12조의5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2.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② 법 제19조의13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소숫점 이하는 이를 한 대로 본다)로 완화할 수 있다. 단, 자주식 주차가 가능한 경우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8.2.5.]

제16조 <삭제 2001. 7. 9>

제17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2.5.>

1.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장소에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 3 장 보 칙

제18조(보조) ① 시장은 기존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내에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에는 동두천시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범위안에서 내집안 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비율은 설치비용의 80% 범위내로 하며 보조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5. 1. 10>

제19조(과징금 처분 등) ① 법 제24조의2 제2항 및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과와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부분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기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삭제 98. 11. 1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5. 1. 10>

제20조 삭제<2020. 1. 1.>

제21조(의견청취) 조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 11. 10, 개정 2005. 1. 10>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1. 10>

부칙<1998. 1. 19 조례 제9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가 신청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8. 11. 10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4. 16 조례 제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10. 11 조례 제1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7. 9 조례 제10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2. 1. 22 조례 제11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건축신고를 한 공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완화된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2003. 6. 12 조례 제1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0. 23 조례 제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 10 조례 제12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8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동두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존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내에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

부칙<2006. 11. 6 조례 제1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6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2. 11 조례 제1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2. 31 조례 제1642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허가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허가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 중인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5. 10. 30. 조례 제1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4.11. 조례 제1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2.5. 조례 제19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허가·신고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허가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 중인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2018.8.13. 조례 제2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1.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7. 29. 조례 제2208호>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차량 : 50% 감면

②~⑤ 생략

부칙 <2022. 12. 30. 조례 제2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18. 조례 제2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황주룡 의원)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4. 1.

발 의 자 :

□ 제정이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 이에 맞추어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기한을 서명부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신설하고자 함.
- 또한 주민조례청구제도 운영 실정에 맞게 내용을 보완·수정하고 서식을 재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보정기간을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수정함(안 제11조)
- 청구인명부 제출 후 수리·각하 결정기한을 규정함(안 제12조)

- 청구인명부 서명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열람기간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 청구인명부 서명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 주민조례청구의 철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

○ 별지 서식 수정 및 추가(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 제정조례안 : 불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2조

☐ 참고사항 : 불임

○ 현행 조례 - 「동두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동두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10일”을 “20일”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해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 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제14조(청구의 철회)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날부터 시행한다.

■ 동두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주민조례청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동두천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	-----------------------

주요내용	
------	--

청구이유	☐ ☐ ☐
------	--

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안, 대표자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	☐ 이용신청 ☐ 이용신청 안함
--	---

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	▶ 대표자 전화번호 ☐ 공개 ☐ 비공개 ▶ 대표자 상세주소 ☐ 공개 ☐ 비공개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동두천시의회의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동두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주민주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신고인(대표자) _____년 _____월 _____일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의회 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m²]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동두천시의회의장 직인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청구인명부의 표지)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청구인명부

청 구 사 유 :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 주민 수 : 명

위 주민조례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를 제출(주민e직접 플랫폼의 전자서명부 활용요청 포함)합니다.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의 수임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 방법

- “괄호()” 안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청구인명부는 동별로 별도로 철합니다.
-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청구인명부

청구조례명	청구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주요내용	○ ○ ○
서명을 요청한 사람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위 주민조례청구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합니다.

※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서명요청 시 조례안 및 대표자·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	비고

작성방법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이의대상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의회의장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주민조례청구 철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청구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주민조례청구서	년 월 일	
제출일자		

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바랍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대표자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증명서 포함)	수수료
류		없음

유의사항
- 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 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 은 <u>10일</u> 이내로 한다. <u><신 설></u>	제11조(보정기간) ----- ----- -- <u>20일</u> -----. 제13조(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u>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u>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u> <u>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u> <u>거나 각하해야 한다.</u> 1. <u>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u> <u>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u> <u>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u> <u>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u> <u>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u> <u>인 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u> <u>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u> 2. <u>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u> <u>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조제3</u> <u>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u> <u>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u>

<신 설>

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
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
난 날)부터 3개월 이내

제14조(청구의 철회)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
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
라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
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
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6.>

[시행일: 2024. 2. 17.] 제12조

■ **동두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동두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회의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회의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회의 의장은 시와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시 게시판, 시 홈페이지

동두천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권영기 의원)

의안 번호	
----------	--

발 의 연 월 일 : 2024. 1.

발 의 자 :

□ 제정이유

- 맨홀 등 도로상 작업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두천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작업구 관리계획 수립(안 제5조)
- 작업구의 점검 등(안 제6조)
- 작업구의 정비 및 긴급정비 (안 제7조~제8조)
- 기존 작업구의 이전 (안 제9조)

☐ 제정조례안 : 불임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 「도로법」 제2조, 제108조

☐ 참고사항 : 불임

○ 타 지자체의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동두천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두천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
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작업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는 등 안전하고 편

리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구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조사계획
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작업구 정비 세부계획
3. 작업구 정비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작업구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작업구 관리계획에 필요한 경우 작업구 종류, 설치 일자, 설치 위치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작업구의 점검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작업구 관리계획에 따라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와 합

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작업구의 정비) ① 제6조의 점검 결과에 따라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8조(작업구의 긴급정비) ① 시장은 재해·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이탈·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구두통보를 포함한다)한 후 긴급정비공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공사에 참석하여 준공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긴급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시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로 하여금 작업구의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1.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
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작업구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歩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도로망”이란 제10조 각 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지방도 등이 상호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도로망을 말한다.
4. “국가간선도로망”이란 전국적인 도로망의 근간이 되는 노선으로서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를 말한다.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국토교통부장관
 - 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
6.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7. “도로공사”란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및 보수(補修)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8. “도로의 유지·관리”란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도로관리(경미한 도로의 보수 공사 등을 포함한다) 활동을 말한다.

9. “타공작물”이란 도로와 그 효용을 함께 발휘하는 독, 호안(護岸),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가로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제108조(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제10조 각 호에 열거된 도로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는 제2조제2호·제9호, 제4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7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8조, 제69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0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9조,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 제95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6조, 제107조, 제111조, 제113조제1항제2호,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붙임 2**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16. 3. 16. 제정]
- ☐ 수원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16. 8. 12. 제정]
- ☐ 안양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16. 11. 10. 제정]
- ☐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0. 10. 19. 제정]
-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1. 6. 30. 제정]
- ☐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1. 7. 2. 제정]
- ☐ 당진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2. 4. 15. 제정]
- ☐ 성남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2. 10. 31. 제정]
- ☐ 여수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2. 12. 30. 제정]

동두천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임현숙 의원)

의안 번호	
----------	--

발 의 연 월 : 2024. 1.
일
발 의 자 :

☐ 제정이유

- 동두천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 예술인 창작활동 장려 및 주민 문화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미술품의 범위 및 작가의 자격(안 제3조~제4조)
- 미술품 임차·대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5조~제7조)
- 미술품 임차·대여(안 제8조~제9조)
- 미술품 임차·대여 선정 심의 및 결정 등(안 제10조~제11조)
- 시행규칙(안 제12조)

☐ 제정조례안 : 불임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3조의2

☐ 참고사항 : 불임

- 미술품 임차 및 대여 관련 조례 현황

동두천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 예술인 창작활동 장려 및 주민 문화 만족도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차”란 미술품을 작가로부터 일정한 조건으로 빌리는 것을 말한다.
2. “대여”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임차한 미술품을 관내 관공서, 민간 등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미술품의 범위) 임차·대여 대상 미술품은 작가의 사상·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서화, 조각, 공예, 사진 등의 시각적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한 창작물로 한다.

제4조(작가의 자격) 미술품 임차·대여 대상 작가는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예술인으로 한다.

1.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전시전(개인 또는 단체) 1회 이상 참여자
2.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증명을 소지한 자

제5조(미술품 임차·대여 심의위원회) ① 미술품 임차·대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미술품 임차·대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미술품 임차·대여 선정 심의 및 의결
2. 임차 대상 미술품의 진위 여부 심의
3. 임차·대여 가격 의결
4. 작가의 문화예술 또는 지역 발전 공헌도 검토
5. 그 밖에 미술품 임차·대여와 관련하여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외부전문가 2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제3조에 따른 분야와 관련된 예술단체 회원이나 예술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3. 제3조에 따른 분야별 작가

4. 그 밖에 예술 관련 분야 전문가

⑤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미술품 임차·대여 업무 담당 팀의 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미술품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원회에 관한 규정 준용) 위원회에 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본인과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 연구, 증언, 진술, 감정, 감사, 수사, 조사, 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미술품 임차) ① 시장은 제3조의 미술품의 범위에 속하고, 제4조의 자격을 갖춘 작가의 미술품을 공고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차할 수 있다.

② 미술품을 시에 빌려주고자 하는 작가는 시행규칙에 따라 시장에 신청해야 하고, 시장은 전단에 따른 서류 등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미술품의 월 임차료는 작가의 임차 희망가격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미술품 임차료 지급 기준표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해당 작가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시장이 미술품을 임차할 때는 미술품의 분실, 훼손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 대여자의 귀책 사유에 따른 미술품의 분실, 훼손 등은 대여자가 전액 변상한다.

⑥ 시장은 지역 작가들에 대한 균등한 기회 제공과 다양한 작품 임차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작가 1인당 임차할 수 있는 작품의 수량과 임차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미술품 대여) ① 시장은 공고를 통하여 제8조에 따라 임차한 미술

품을 관내 관공서 또는 민간에게 대여할 수 있다.

② 미술품의 월 대여료는 시행규칙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미술품을 대여할 때는 대여자에게 미술품을 대여한 사실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미술품을 효율적으로 대여하기 위해 민간 예술단체 등에 대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미술품의 임차·대여 선정 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임차하고자 하는 미술품의 심의를 위하여 작가 또는 소장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임차할 미술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신력 있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미술품의 가격 및 진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시행규칙에 따라 미술품의 임차·대여 여부 및 적정 가격 등을 결정하고, 미술품 임차·대여 선정 심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결정의 취소) 시장은 임차·대여한 미술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임차·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위작, 표절 등 미술품 내용이 거짓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임차·대여한 자가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미술품 임차·대여 절차의 투명성을 훼손시킨 것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임차·대여의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시행규칙) 미술품 임차·대여 가격 결정 기준을 비롯한 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미술품의 임차료 지급 기준표

구 분	작 품 규 격	임 차 료 (월)
가형	20호 미만	5만원 이내
나형	20호 이상 ~ 40호 미만	10만원 이내
다형	40호 이상 ~ 80호 미만	15만원 이내
라형	80호 이상	20만원 이내

주 1. 미술품의 규격(호)은 대한민국 미술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주 2. 창작물의 특성상 위 기준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 임차료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도지정문화유산 또는 시·도자연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시행일: 2024. 5. 17.] 제13조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3., 2023. 3. 21.>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제3조의2에 따른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의2(예술 활동의 증명) ①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절차 및 세부 기준 등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라 저작물을 공표한 사람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붙임 2

미술품 임차 및 대여 관련 조례 현황

기준일 : 2023. 12. 18.

연 번	지자체명 (무작위순)	자치법규명	제·개정일자	구분		
				임차	대여	기타
1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서구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2023. 2. 28. 제정	○	○	-
2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2019. 11. 15. 제정	○	○	-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2021. 11. 1. 일부개정	○	○	구입
4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	2021. 9. 28. 제정	○	-	구입
5	경기도 김포시	김포시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	2023. 7. 12. 일부개정	○	-	구입
6	전남 화순군	화순군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	2019. 12. 11. 일부개정	○	-	구입
7	전남 신안군	신안군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에 관한 조례	2023. 3. 2. 일부개정	○	-	구입, 기증, 기탁
8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미술은행 운영 조례	2021. 9. 29. 제정	○	○	-

※ 임차: 시·군·구가 작가로부터 미술품을 빌리는 것

(단,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의 '임차'는 구가 보유한 미술품을 관내 관공서, 민간 등에서 빌리는 행위로 규정)

※ 대여: 시·군·구가 보유(임차)한 미술품을 관내 관공서, 민간 등에 빌려주는 것

동두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김승호 의원)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4. 1. .

발 의 자 :

☐ 제정이유

- 동두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적용 범위(안 제3조)
- 의장의 책무(안 제4조)
- 교류협력 대상(안 제5조)

- 사전검토 및 사전교류(안 제6조~제7조)
- 교류협력 내용 및 자매결연등 체결(안 제8조~제9조)
- 사후관리 및 협약 해지(안 제10조~제11조)
- 기밀 유지(안 제12조)

☐ 제정조례안 : 불임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참고사항 : 불임

- 시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현황

동두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 등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동두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우호교류를 통하여 형성된 상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등”이라 한다)를 체결·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교류협력 대상) 교류협력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제의를 받거나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면적 및 행정·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2. 산업, 지역 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
5. 역사적·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7조(사전교류) ① 의장은 자매결연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교류 여건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② 자료 및 의견 교환 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 여

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모색한다.

제8조(교류협력 내용) 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교류협력 대상 의회와 성실하게 교류협력한다.

1. 행정 사무감사 및 조례 제·개정 등 의정활동 관련 정보교류
2. 의원 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3. 지역축제 초청·방문 등 비교 견학
4. 그 밖의 현안 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매결연등 체결) ① 자매결연등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열고 공동 관심 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등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 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자매결연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에 관련된 제반 기록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 해지) 의장은 자매결연등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매결연등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12조(기밀 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등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시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현황**

기준일 : 2023. 12. 6.

연번	지자체명	자치법규명	제정일자
1	강진군	강진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23. 3. 30.
2	거제시	거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23. 7. 20.
3	광명시	광명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23. 4. 11
4	김포시	김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23. 9. 27.
5	남원시	남원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23. 10. 18.
6	목포시	목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23. 5. 30.
7	무안군	무안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22. 12. 30.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23. 9. 25.
9	성남시	성남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22. 12. 19.
10	신안군	신안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23. 11. 20.
11	안양시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19. 10. 28.
12	오산시	오산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23. 11. 1.
13	완도군	완도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22. 5. 3.
14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23. 11. 3.
15	이천시	이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23. 8. 14.
16	전주시	전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23. 4. 10.
17	제천시	제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23. 10. 13.
18	진도군	진도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23. 5. 25.
19	파주시	파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23. 4. 10.
20	함평군	함평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23. 4. 19.
21	화성시	화성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23. 4.14.

동두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4. 1. 18.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4. 1. 25.

다. 상정일자 : 제32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심의의 전문성을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 정비(안 제2조 제1호)
 - “정보”용어의 정의 정비
-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 제목 정비(안 제5조)
 - 정보의 공표 등 →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 다중부서 지정 방법 신설(안 제10조 제3항)
 - 주관부서 및 지원부서 지정방법 신설
-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비율 조정(안 제12조)

- 외부 전문가 위원 비율 확대(3인→ 위원수의 3분의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 중 외부전문가의 비율을 당초 3명에서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하는 다중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된 사항은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4. 1. 18.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4. 1. 25.

다. 상정일자 : 제32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아동복지법」 제14조(아동위원) 조문에 근거하여 아동위원 위·해촉 요건을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아동위원 위촉시 “관할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야 한다는 규정 삭제(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 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 활동을 보조하는 각 동별 아동위원의 선정 시 당초 동장의 추천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시장이 바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개정안은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4. 1. 18.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4. 1. 25.

다. 상정일자 : 제32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자연휴양림 어울림, 동두천 림스파 준공에 따른 시설물의 정의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 시설물의 운영 및 사용시간, 예약 방법, 사용료 및 감면 기준 범위를 신설
- 내실 있는 시설 운영을 위한 조례 보완 및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객 편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동두천 림스파 위치 및 용어 신설(안 제2조(위치), 제3조(정의))
- 산림문화 휴양시설(어울림, 림스파) 시설별 운영 및 사용시간 신설(별표 1)
- 산림문화 휴양시설(어울림, 림스파) 사용료 신설
 - 자연휴양림 어울림 숙박요금, 세미나실 사용료 신설(안 별표 2)
 - 동두천 림스파 단체스파, 가족스파실 사용료 신설(안 별표 2)
 - 자연휴양림 단체(1일 5객실+세미나실) 이용객 시설사용료(세미나실) 및 프로그램

램 참가료 20% 할인 신설

- 숙박(숲속의집, 휴양관, 어울림) 이용객 림스파 10% 할인 신설(안 별표2)

※ 동두천시 소비정책위원회 사용료 및 감면 결정(2023. 11. 14)

- 숙박시설 단체(1일 5객실+세미나실) 이용객 활성화를 위한 사용예약(사전) 및 사용허가 조항 신설(안 제14조 3호, 별지)

○ 놀자숲 사용료 기준 정비

- 입장권, 오후권 신설 및 일부 시설 통합권으로 통합(별표3)

○ 자연휴양림 산림복지 소외자 이용 신청 방법 신설

- 별도 지정 객실로 한정하여 우선 예약 시행 (안 제15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준공을 앞둔 동두천 자연휴양림 어울림과 동두천 림스파 등 공공 휴양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설별 이용료와 사용시간 기준을 확립하고 현재 운영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서비스품질 향상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전체적으로 사용료를 소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사항은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4. 1. 18.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4. 1. 25.

다. 상정일자 : 제32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공영주차장 중 2시간 이내 무료 주차 허용 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상패동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기준을 개선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대로 환불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기 주차 이용자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환불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준용하여 환불 규정 명확화(안 제6조)
- 운영 실정을 반영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개정 (별표1)
 - 2시간 이내 무료 주차 허용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기준 신설
 - 상패동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의 이용 증대를 위해 중·대형차 주차구획에 한하여 1구획당 차량 2대를 기준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여론을 반영하여 2시간 무료 주차 허용 구역에서의 요금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이용자들의 이용 현실을 감안하여 차량 대수가 아닌 주차 구획을 기준으로 월 정기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사항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합리적인 요금체계 확립으로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4. 1. 18. 황주룡 의원 외 6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24. 1. 25.

다. 상정일자 : 제32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기한을 서명부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신설하고자 함.
- 또한 주민조례청구제도 운영 실정에 맞게 내용을 보완·수정하고 서식을 재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보정기간을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수정함(안 제11조)
- 청구인명부 제출 후 수리·각하 결정기한을 규정함(안 제12조)
 - 청구인명부 서명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열람기간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 청구인명부 서명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 주민조례청구의 철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
- 별지 서식 수정 및 추가(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을 완화하고,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 또는 각하 결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통지의무 기한 등을 신설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4. 1. 18. 권영기 의원 외 6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24. 1. 25.

다. 상정일자 : 제32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맨홀 등 도로상 작업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두천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작업구 관리계획 수립(안 제5조)
- 작업구의 점검 등(안 제6조)
- 작업구의 정비 및 긴급정비 (안 제7조~제8조)
- 기존 작업구의 이전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제정조례안은 도로상의 맨홀 등 작업구를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에게 매년 작업구 관리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전 점검 후 그 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신속한 정비와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불량 맨홀 등으로 인한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지속적인 점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4. 1. 18. 임현숙 의원 외 6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24. 1. 25.

다. 상정일자 : 제32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동두천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 예술인 창작활동 장려 및 주민 문화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미술품의 범위 및 작가의 자격(안 제3조~제4조)
- 미술품 임차·대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5조~제7조)
- 미술품 임차·대여(안 제8조~제9조)
- 미술품 임차·대여 선정 심의 및 결정 등(안 제10조~제11조)
- 시행규칙(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고취하고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시에서 미술품을 임차한 후 관내 주요 시설에 전시 또는 대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임차할 작품의 선정과 적정 임차료를 결정하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조례는 시민들로 하여금 누구나 쉽게 일상에서 가까운 곳에서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돕고, 예술인들에게는 창작 의욕을 북돋게 하여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밖에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4. 1. 18. 김승호 의원 외 6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24. 1. 25.

다. 상정일자 : 제32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동두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적용 범위(안 제3조)
- 의장의 책무(안 제4조)
- 교류협력 대상(안 제5조)
- 사전검토 및 사전교류(안 제6조~제7조)
- 교류협력 내용 및 자매결연등 체결(안 제8조~제9조)
- 사후관리 및 협약 해지(안 제10조~제11조)
- 기밀 유지(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제정조례안은 동두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